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5

발의연월일: 2020. 7. 14.

발 의 자: 박찬대·신동근·김홍걸

이동주・맹성규・강선우

김교흥 · 정일영 · 허종식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그간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교육기회확대와 인재양성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래사회의 도래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초·중등교육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임.

이에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 교원의 휴직과 복직을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 나.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 드시 설치하도록 함(안 제54조의4).
- 다. 국공립 교원의 징계종류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61조제3항 신설).
- 라.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신설).
- 마.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를 준용함(안 제70조의3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휴직"을 "강등 휴직"으로 한다.

제53조의2제2항 중 "敎員의 임용권"을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初等學校·고등기술학교·高等公民學校·幼稚園과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罷免·解任·停職·減俸·譴責"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3을 제70조의4로 하고,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4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	
(降任), <u>휴직</u> , 직위해제, 정직	<u>강등 휴직</u>
(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第53條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	第53條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
원의 임용) ① (생 략)	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의 임	② <u>임용권과</u>
<u>용권</u> 은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
장에게 委任할 수 있다.	
	,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第53條의4(敎員人事委員會) ① 各	第53條의4(教員人事委員會) ①
級學校(初等學校・고등기술학	<u>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u>
교・高等公民學校・幼稚園과	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제	각종학교
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	

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 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 여 당해 學校에 敎員人事委員 會를 둔다.

② (생략)

- (생 략)
 - ② 懲戒는 罷免・解任・停職・ 減俸・譴責으로 한다.

<신 설>

③ ~ ⑤ (생 략)

제66조(징계의결) ① ~ ④ (생 략)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 第61條(懲戒의 事由 및 種類) ① | 第61條(懲戒의 事由 및 種類) ① (현행과 같음)
 - ② -----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 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 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 제66조(징계의결) ① ~ ④ (현행 과 같음)
 - ⑤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 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신 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생 략)

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 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 교 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 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의 신규채 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 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 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

(현행 제70조의3과 같음)